



## 서울중앙지방법원

### 제 13 민사부

#### 판 결

사 건 2015가합508247 부정경쟁행위 중지 등  
원 고 주식회사 아모스프로페셔널  
피 고 주식회사 세리화장품  
변 론 종 결 2015. 9. 1.  
판 결 선 고 2015. 10. 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 ① 피고는, 모발용 에센스, 모발용 스타일링 제품, 모발용 크림 제품에 대하여 별지(1) 표시 용기 및 단상자를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한 위 제품들을 생산, 판매, 반포, 광고 또는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피고는 피고의 본점, 지점, 영업소, 공장, 직영판매점, 창고에 보관 또는 사용하고 있는 ①항 기재 용기 또는 제품을 폐기하라.



- ③ 피고는 원고에게 80,039,63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 유

###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amos'라는 브랜드로 모발용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로서, 2006년경 모발용 '컬링 에센스' 제품을 출시하였고 2011. 6월경부터 별지(2) 표시 용기 및 단상자를 사용하여 '컬링 에센스' 제품(이하 '원고 제품'이라 한다)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나. 피고는 'achoa'라는 브랜드로 모발용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로서, 2011. 12월경부터 별지(1) 표시 용기 및 단상자를 사용하여 헤어 에센스 제품(이하 '피고 제품'이라 한다)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1, 12, 26,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의 주장

○ 별지(2) 표시와 같은 원고 제품의 용기 및 단상자는 원고의 상품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다.

○ 피고는 원고 제품의 용기 및 단상자를 모방하여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로 제작한 별지(1) 표시의 용기 및 단상자를 사용하여, 피고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 피고의 위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1) (가)목의 부정경쟁행위(상품출처 혼동행위) 또는 (자)목의

---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정의)



부정경쟁행위(상품형태 모방행위)에 해당하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그 행위의 금지, 이로 인한 조성물의 폐기 및 손해배상으로 80,039,632원의 지급을 구한다.

### 3. 상품출처 혼동행위 여부

#### 가. 용기 및 단상자의 의미(= '상품의 용기·포장' 또는 '상품'의 일부)

원고는 원고 제품의 용기 및 단상자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상품의 용기·포장'으로서 위 규정에 의해 보호받는 '상품표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가 이와 유사한 피고 제품의 용기 및 단상자를 사용함으로써 위 (가)목의 부정경쟁행위 즉, 상품출처 혼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한편, 원고 제품의 용기 및 단상자의 형태를 피고가 모방하여 피고 제품을 생산, 판매함으로써 위 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부정경쟁행위 즉, 상품형태 모방행위를 하였다고도 주장하고 있는바, 위 용기 및 단상자가 위 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상품의 용기·포장'이기도 하면서 (자)목의 '상품'의 일부이기도 하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언상으로는 위 (가)목 규정의 '상품의 용기·포장'과 위 (자)목 규정의 '상품'은 구별되어야 하나,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모발용 제품들은 젤(gel)이나 크림의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는 어떤 고정된 '형태'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없고, 시중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서 이러한 제품들이 날개의 용기 및 포장용 단상자와 분리된 제품 자체의 상태로 거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가 이러한 제품들을 구매하여 사용함에 있어서도 그 용기를 제품 자체와 불가분적으로 결합하여 사용하리라고 보이므로, 원고 제품의 용기 및 단상자를 위 (가)목의 '상품의 용기·포장'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위 (자)목의 적용에 있어서는 '상품'의 일부분이기도 한 것으로 보고 살피기로 한다.

#### 나. 관련 법리

##### 1) '상품의 용기·포장'이 상품표지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

일반적으로 상품의 용기나 포장은 상품 출처를 표시하는 것은 아니나, 어떤 용기나 포장의 형상과 구조 또는 문양과 색상 등이 상품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그것이 장기간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 형상과 구조 또는 색상 등이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6187 판결 등).

##### 2) '상품의 형태'가 상품표지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

어떤 상품의 형태가 출처표시 기능을 갖고 나아가 주지성까지 획득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품형태가 다른 유사상품과 비교하여 수요자의 감각에 강하게 호소하는 독특한 디자인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등 수요자가 일견하여 특정 영업주체의 상품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식별력을 갖추어야 하며, 나아가 당해 상품형태가 장기간 특정 출처의 상품으로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



거나 단기간이라도 강력한 선전·광고가 이루어짐으로써 상품형태가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0044 판결).<sup>2)</sup>

#### 다. 판단

원고와 피고 각 제품의 용기 및 단상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인지 여부를 차치하고(4.항에서 살피게 된다), 먼저 원고 제품의 용기 및 단상자 자체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원고의 '상품표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위 용기 및 단상자가 '상품의 용기·포장'으로서 그 형태가 상품표지에 해당하는지, 또는 '상품의 일부분'으로서 그 형태가 상품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결론이 달라질 이유는 없을 것이므로, 굳이 구별하지 않고 한꺼번에 본다).

##### 1) 형상과 구조

원고 제품의 용기 및 단상자의 '형상과 구조'는 별지(2)에서 보듯이, 동종 상품의 용기 및 포장인 기능적으로 갖는 통상적인 형식[용기는 젤이나 크림 상태의 내용물을 담아 짜내서 쓰기 위한 합성수지 재질의 긴 튜브의 형상이고, 세워둘 수 있도록 받침대 역할을 겸하는 큰 뚜껑(마개)이 있는 구조이며, 단상자는 용기를 넣어 포장하기 위한 세로로 긴 직육면체 형상의, 종이상자 구조임]을 취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형상과 구조는 동종 상품의 용기 및 단상자들도 기능상 통상적으로 취하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형상과 구조에 어떤 독특한 디자인적 특징이 있어 원고 제품에 특별한 개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또한 그것이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거나,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2) 위 1)항과 2)항의 각 요건은 표현이 다소 다를 뿐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이라 할 것이다.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차별적 특징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 2) 문양, 색상, 인쇄된 부호나 정보 등

결국 형상이나 구조를 제외한 나머지 문양이나 색상 등의 요소만을 가지고 원고 제품 용기 및 단상자가 상품출처 표시 기능을 갖추었는지, 즉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로부터 하여금 그것이 원고 제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르렀는지를 살펴야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 없다.

① 원고 제품의 용기는 튜브 부분은 흰색, 뚜껑 부분은 보라색이고 어떤 그림이나 문양 등이 전혀 없다. 그리고 튜브 부분의 앞면과 뒷면 각 상단(뚜껑의 반대쪽)에 ‘’의 표시(왼쪽과 오른쪽의 ‘4’와 ‘0’은 외곽선만 표시되어 있고, 가운데의 ‘04’는 보라색으로 표시됨)가 있고, 검은색과 보라색 글씨로 브랜드와 제품의 명칭 및 설명 등이 인쇄되어 있다.

② 위와 같이 동종 상품의 통상적인 형상·구조를 가지면서 무늬나 그림도 없는 흰색 튜브와 보라색 뚜껑의 위 용기가 그 색상 등의 요소만으로 상품출처가 원고임을 나타내는 상품표지로 거래자나 수요자들에게 인식된다고 하기 어렵다.

③ 위 ‘’ 표시 부분은 외견상 단순한 숫자의 결합에 불과하여 이러한 표시가 있다는 것만으로 원고 제품의 용기가 수요자의 감각에 강하게 호소하는 독특한 디자인적 특징을 가지게 된다거나 원고 제품만의 독특한 개성을 나타낸다고 하기는 어렵다. 또한 위 표시 중 ‘04’의 숫자는 기능별로 상품을 구별하는 일련번호의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원고의 모발용 제품들 중 베이지 라인은 ‘01’, 녹차실감 라인은 ‘02’, 리페어포스 라인은 ‘03’, 스타일 라인은 ‘04’, K-TOUCH 라인은 ‘05’, 남성 라인은 ‘06’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와 같이 모발용 제품에 일련번호를 붙이는 것은 동종



업체들도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다.

④ 또한 용기에 검은색과 보라색 글씨로 브랜드와 제품 명칭 및 설명 등이 인쇄되어 있다는 점에 관해서도, 동종 상품들도 마찬가지로 용기에 이러한 사항을 인쇄하고 있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보여지는 이상, 단지 검은색과 보라색 글씨라는 점만으로 이를 수요자의 감각에 강하게 호소하는 독특한 디자인적 특징으로서 원고 제품만의 독특한 개성을 나타내고 있는 요소라 할 수 없다.

⑤ 원고 제품의 단상자는 모든 면이 흰색인 종이상자이고, 각 면에 어떤 그림이나 문양 등이 전혀 없다. 그리고 단상자의 앞면과 뒷면 각 상단에는 보라색 글자로 '04'가 표시되고 양 측면 각 상단에는 외곽선만 표시된 '04'가 표시되어 있으며, 단상자의 각 면에 검은색과 보라색 글씨로 제품의 명칭과 설명이 인쇄되어 있다.

⑥ 이러한 아무런 무늬나 그림도 없는 단지 흰색의 종이상자인 위 단상자가, 그 문양이나 색상, 단순한 숫자의 결합인 '04'의 표시, 검은색과 보라색 글씨로 쓰여진 제품 명칭과 설명 등의 요소에 의해 상품 출처가 원고임을 나타내는 상품표지로 거래자나 수요자들에게 인식된다고 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은 위 용기에 관하여 위 ② 내지 ④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이다.

⑦ 결국 위 용기나 단상자 자체가 아니라, 용기와 단상자에 인쇄된 원고의 브랜드(amos) 표시가 거래자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출처가 원고임을 인식케 하는 상품표지로 기능한다고 보일 뿐이다.

#### 라. 소결론

이와 같이 원고 제품의 용기 및 단상자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상품표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의 유사 상품표지(피고 제품의 용기 및 단상자) 사용에 의한 상품출처 혼동행위의 금지, 조성물의 폐기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부분 청구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4. 상품형태 모방행위 여부

##### 가.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서 '모방'이란 타인의 상품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며, 형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변경의 내용·정도,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0044 판결 등 참조).

##### 나. 판단

원고 제품의 용기 및 단상자와 피고 제품의 용기 및 단상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에 해당하는지 살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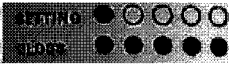

##### 1) 형태의 구성요소 중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갖는 요소의 제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서 모방의 대상인 '상품의 형태'는 '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는데, 다만 피침해자의 제품과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는 이를 모방하더라도 (자)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위 (자)목 단서의 (2)], 원고와 피고 각 제품의 용기 및 단상자의 형태를 비교함에 있어서도 동종 상품의 통상적 형태에 포함되는 요소 즉, 위 3. 다.의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용기의 형상과 구조(합성수지 재질의 긴 튜브의 형상, 받침대 역할을 겸하는 큰 뚜껑이 있는 구조) 및 단상자의 형상과 구조(세로로 긴 직육면체 형상, 종이 상자 구조)는 양자가 똑같이 구비하고 있더라도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요소들만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 2) 각 용기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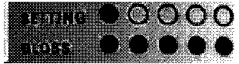

우선 원고와 피고의 각 제품 용기는 모두 튜브 부분은 흰색, 뚜껑 부분은 보라색이고 어떤 그림이나 문양은 전혀 없으며, 튜브 부분에는 검은색과 보라색 글씨로 브랜드와 제품의 명칭 및 설명 등이 인쇄되어 있고, 제품의 효능이 원고 제품의 용기에는 '  '와 같이, 피고 제품의 용기에는 '  '와 같이 비슷한 형식으로 표시되어 있는 등 일부 유사한 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만으로는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 제품의 용기와 원고 제품의 용기의 각 형태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① 원고 제품 용기의 용량은 150ml, 피고 제품 용기의 용량은 210ml로서 크기가 상당히 다른 점


② 원고 제품 용기에는 앞면과 뒷면 상단에 '  '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피고 제품 용기에는 앞면의 하단에만 '  '라는 표시가 되어 있고(그 표시의 위치가 다름), 각 표시의 내용도 '4040'과 '04'로서 다르며, 크기도 서로 다른 점

③ 각 용기에 인쇄된 브랜드 및 제품 명칭과 설명의 내용과 표시 위치가 서로 다른 점(원고 제품의 브랜드는 아래쪽에 'amos PROFESSIONAL'로, 제품명은 위쪽에 'STYLE Curling Essence'로, 피고 제품의 브랜드는 위쪽에 'achoa PROFESSIONAL'로, 제품명은 중간 위치에 'CURL-UP Moisture Essence'로 각 표시되어 있음)

④ 제품의 효능 표시는, 동종 업체들도 원고 제품 용기의 '  ' 표시와 유사한 방법을 흔히 사용하고 있는 점(을 제14호증 참조) 및 피고 제품 용기의 '  ' 표시도 유사하기는 하나 한편으로는 효능의 정도를 네모꼴로 표시하고 머릿결 윤기를 'GLOSS'로 표시하고 있어 원고 제품 용기가 효능의 정도를 동





그라미로 표시하고 머릿결 윤기를 'SHINNING'으로 표시한 것과 다른 점

⑤ 원고 제품의 용기의 뒷면에는 '  '의 표시가 있는 반면, 피고 제품의 용기의 뒷면에는 이와 같은 표시가 없는 점

⑥ 각 제품의 튜브, 뚜껑, 인쇄된 글씨에 사용된 흰색, 검은색, 보라색의 3가지 색상을 원고만의 독특한 개성을 느끼게 하는 색상이라 할 수 없고, 이는 동종 상품에서도 흔히 사용되고 있는 색상인 점(을 제3호증 참조)

### 3) 각 단상자의 비교

우선 원고와 피고의 각 제품 단상자는 모두 앞면과 뒷면이 흰색이고 어떤 그림이나 문양은 전혀 없으며, 앞면과 뒷면에는 각 보라색의, 측면에는 원고 제품은 보라색, 피고 제품은 흰색의 '04'라는 표시가 되어 있으며, 각 면에 검은색과 보라색 글씨로 브랜드와 제품의 명칭 및 설명 등이 인쇄되어 있고, 제품의 효능이 원고 제품 단상자에는 '  '와 같이, 피고 제품 단상자에는 '  ')와 같이 비슷한 형식으로 표시되어 있는 등 일부 유사한 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만으로는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 제품의 단상자와 원고 제품의 단상자의 각 형태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① 원고 제품 단상자와 피고 제품 단상자의 크기가 상당히 다른 점

② 원고 제품 단상자와 피고 제품 단상자에 표시된 '04'의 각 위치(원고 제품은 상단, 피고 제품은 하단)가 서로 다르고, 크기도 다른 점

③ 원고 제품 단상자는 모든 면이 흰색인데, 피고 제품 단상자는 측면과 윗면(상자 뚜껑) 부분이 보라색이며, 원고 제품 단상자의 측면에는 앞면과 같이 수직방향으로 '04'표시와 제품 설명이 인쇄되어 있는데, 피고 제품 단상자의 측면에는 앞면과 달



리 수평 방향으로 '04'표시가 인쇄되어 있고 제품 설명이 아닌 제품 명칭만 인쇄되어 있는 점

④ 위 1)항의 ③, ④, ⑥과 동일한 내용의 사정('용기'를 '단상자'로 함)

#### 라. 소결론

이와 같이 피고 제품이 원고 제품의 형태를 모방한 것이라고 인정될 수 없는 이상, 피고의 상품형태 모방행위의 금지, 조성물의 폐기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부분 청구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현룡

                 판사      박 민

                 판사      황정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5-11-12

별지(1)

피고 제품

용기		단상자	
정면도	사시도	정면도	사시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5-11-12

별지(2)

원고 제품

용기		단상자	
정면도	사시도	정면도	사시도
			